수 신 : 흥국화재해상보험 ㈜

참 조 :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 (Tel : 02. 2011-0300 / Fax : 0503-8379-2008)

Email: jayoung.yoon@lockton.com, chaeeun.lee@lockton.com

(메일접수시 수신에 대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신을 받지 못하신 경우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리사배상책임보험 사고 통보서

1. 피보험자(변리사) 인적사항

보험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기간	~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번호
소급담보일	년	월	일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만원 /	만원
사업장 연락처	담당자 성명 : 주소 :			T)	F)	

^{*}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피해자(의뢰인) 인적사항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연 락 처	사업장 주소	
배상청구일	청구금액	

Ⅲ. 진행 경과

날 짜	내 용	비	고
		업무 수	누임일
		수임서류	- 수령일
		제출서류	- 작성일
		서류 저	세출일
		수임업무	- 오류일
		사고발상	성 인식일
		구두 손해배상	-상 청구일
		정 [.] 손해배성	식 강청구일
		기	타

※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수임받은 일부터 시간경과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 기재요망!

1— 110		
1. 사고일자 :		
2. 청구일자 :		
3. 사고금액 :		
4. 업무담당자 : - 변리사 :	- 직원 :	
5. 사고원인 :		

■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Ⅳ 사고내용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손해사정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착수 전에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 의사를 금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합니다.

고객님께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3영업일 내(회신기한 연장요청시 10영업일) 선임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 지연 시 사고현장 훼손,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 업자가 손해사정 업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당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 업무진행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 및 사고상세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보험사고 접수를 신청합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피보험자 및 신청인: (인)

※ 3페이지 사고상세를 반드시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상세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요망	